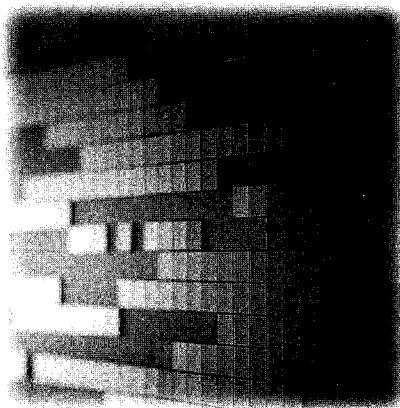


제105호 2021년 1월

기업과 금융에 관한 법률전문 저널

BFL

Business / Finance / Law



CFL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Center for Financial Law

사이버보험의 주요 내용 및 쟁점

권진홍* · 김새움**

I. 사이버보험의 개요

1. 사이버보험의 개념

최근 국내외적으로 사이버 공격 사례가 증가하고 그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사이버 공격이나 범죄 등으로 인한 피해규모도 천문학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으로 인한 각종 손해를 담보해주는 사이버보험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사이버 공간에 연결되는 재화, 서비스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도 이에 비례하여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1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을 선호하는 언택트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온라인 보안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사이버 보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사이버보험은 1997년 세계 최초로 Y2K문제(밀레니엄버그)를 계기로 미국 보험회사 AIG가 선보인 이후, 국내에서는 2012년경 최초로 출시되기 시작한 일종의 신종보험이다.

OECD(2017)에 따르면, 사이버 사고의 범위 및 유형은 (1) 정보유출(제3자 정보유출/ 당사자 정보유출), (2) 시스템 오작동(당사자 시스템 오작동/ DDoS 공격 등 네트워크 통신 오작동/ 악성코드 전파 등 제3

자 시스템 오류 야기 등), (3) 데이터 손상, 이용제한 (데이터 삭제/ 랜섬웨어 등 데이터 암호화), (4) 기타 (사이버 사기, 절도 등)으로 구분된다.

위와 같은 사이버 사고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이버 보험이 출현, 발전하기 시작했다. 현재 사이버보험에 관한 일관된 정의는 없으나, 통상 사이버 공격으로 피해를 본 기업의 손해(배상책임 포함)나 조직복구에 드는 비용 등을 보상하여 그 위험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된 보험으로 이해되고 있다¹⁾.

2. 사이버보험의 보상 내용 및 종류

(1) 사이버보험의 보상 내용

사이버보험의 구체적인 보상 범위는 해당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라 다르고, 보험계약자가 선택하는 특약에 따라 그 구성이 달라진다. 전형적인 상품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1) 이승하, 전효정, 김태성, “사이버보험의 위험관리 요구사항”, 정보보호학회 논문지 27(5)(2017), 1233~1245쪽

〈D보험사의 사이버보험상품 예시〉²⁾

- 데이터 손해 또는 도난 담보: 피보험자의 컴퓨터 시스템에 발생한 데이터의 훼손, 도난, 서비스 거부 공격 등이 발생한 경우, 데이터 복구 및 재생성비용, 악성 프로그램 제거 비용, 위기관리, 전문가 비용 등을 보장
- 정보유지위반 배상책임 담보: 피보험자 컴퓨터 시스템상 피보험자의 보호, 관리, 통제에 있는 기밀정보의 도난, 제3자 누설 등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적 배상책임액을 보장
- 개인정보침해 피해 담보: 피보험자의 컴퓨터 시스템상 피보험자의 보호, 관리, 통제에 있는 개인식별정보의 훼손, 도난, 제3자 누설 등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당하게 되는 비용 가운데 배상책임을 제외한 비용(조사 및 질의응답 비용, 규제요건 관리를 위한 비용, 방어비용, 통지 및 의사소통비용, 위기관리비용 등)을 보장
- 개인정보침해 배상책임 담보: 피보험자의 컴퓨터 시스템상 피보험자의 보호, 관리, 통제에 있는 개인식별정보의 훼손, 도난, 제3자 누설 등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부당하는 법적 배상책임액을 보장
- 기업휴지 손해 담보: 보험사고로 부보된 사업활동의 중단에 의한 손실 담보
- 사이버 협박(갈취) 담보 : 사이버 범죄자가 피보험자의 데이터나 컴퓨터 시스템에 사이버 사고를 야기하거나 유지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경우, 협박을 종결시키기 위해 지불하는 협상비용(ransom³⁾), 전문가 상담비용, 제보자 사례 비용 등을 보장
- 네트워크 보안 배상책임 담보: 피보험자의 컴퓨터 시스템에 발생한 악의적 컴퓨터 행위(해킹), 보안환경의 오류, 컴퓨터 멀웨어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속한 재산에 손상이 가해지는 경우(제3자의 컴퓨터 시스템상의 데이터 훼손, 도난, 서비스 거부 등),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부당하는 법적 배상책임액을 보장

- 평판 리스크 담보: 사이버 사고 이후 평판을 관리하기 위해 위기매체 관리를 제공하는 전문가나 홍보회사 등에 지불하는 비용을 보장
- (특약)사이버 도난 담보: 피보험자 명의의 계좌 또는 전자적 자갑에서 불법적으로 전자적 자금이나 자산이 이체됨으로써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 담보

(2) 사이버보험의 종류

사이버보험은 그 ‘형태’에 따라 ① 사이버 리스크 전용의 사이버 보험(전용형 사이버보험; Stand alone Cyber Policy)과 ② E&O 보험⁴⁾, 재물보험 등 기존형 보험상품에 사이버 리스크를 보상하는 특약을 부대하거나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보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약관상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상품의 2종류로 대별된다⁵⁾.

또한 사이버보험은 그 ‘보상 내용’에 따라 ① 사이버 공격으로 피보험자가 직접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 ②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담보로 구성된다.

특히, 보험회사들은 사이버보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상품 이외에도, 위 ② 부분 중 피보험자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부당하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2) D사의 사이버보험[Modular Cyber Insurance (Munich Re Form)] 약관 참조. 이하 사이버보험 약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D사의 사이버보험 약관을 참조, 인용하였다.

3) 랜섬(ransom) : 피보험자가 사이버 범죄자에게 지불하거나 전달하도록 강요받는 현금 아니면 기타 자금 또는 상품, 제품 또는 서비스를 비롯한 재산 형태의 금액 합계를 의미한다(위 약관 제6부문 4. 정의조항).

4) Errors and Omissions Insurance의 약어이고, 과실 및 태만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번역한다. 직무수행상의 과실이나 태만으로 고객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당하게 됨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5) 김종호, “사이버보험의 현상과 법적 과제의 검토 – 미국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법이론실무연구 7(4)(2019. 11.), 한국법이론실무학회, 37쪽

부분만 따로 떼어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과거에는 주로 위 담보만으로 구성된 상품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사이버보험은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에 따라 ① 기업성 사이버보험과 ② 가계성 사이버보험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기업성 보험은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하면서 사이버공격을 당할 경우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는 반면, 가계성 사이버보험은 주로 개인이 사이버 금융범죄로 인하여 입은 손실(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 사기,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 개인정보 피해 보상으로 인한 법률상담비용, 금전손실 등)을 담보한다. 가계성 사이버보험은 개인이 다른 보험상품에 위와 같은 사이버상 위협담보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⁶⁾. 통상 사이버보험은 주로 기업성 사이버 보험에 초점이 맞추어져 논의되나, 넓은 의미에서 사이버보험에는 위와 같은 가계성 사이버보험도 포함된다.

II. 사이버보험 시장

1. 국내외 및 해외 시장 동향

(1) 국내의 경우 사이버 위험이 증가하면서 사이버 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관심도 증가하였지만 사이버보험의 가입률의 증가추세는 예상보다 더디다.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⁷⁾의 경우에 한하여 그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을 뿐이다. 2018. 11. 기준으로 대략 사이버보험 시장 규모는 300~4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⁸⁾. 기존 리스크의 분석 및 가격도출 기법을 적용할 수 있을 만큼의 통계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고, 사고 발생 후의 피해 규모 범위도 측정하기 어려워 수익성 있는 보험상품의 설계가 용이하지 않은 점도 그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⁹⁾.

다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을 선호하는 언택트 문화가 빠르게 확산된 점,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현실로 인해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비해 사이버보험에 대한 관심,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보험의 범위가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손실(근로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소득상실 등)까지도 보장하는 상품으로 확대되고 있다¹⁰⁾.

한편, 사이버 사고는 정보유출 사고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사이버보험과 더불어 이미 판매되었거나 판매되고 있는 일반 손해보험(임월배상책임보험, 전문 배상책임보험, 재산보험, 기업휴지보험 등)과 같은 전통적 손해보험에서 사이버 사고 보장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음에 따른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언더라이팅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묵시적 사이버 리스크’에 유의하고 대비를 해야한다는 문제 의식도 제기되고 있다¹¹⁾.

(2) 미국의 경우 2000년대 개인정보침해사고 체별 강화에 따라 사이버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2005년 이후 사이버 보험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여 2019년 미국 사이버보험시장 규모(원수 보험료 기준)는 22.5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 코로나 19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사이버보험 수요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¹²⁾.

영국은 미국에 비해 사이버보험의 활성화 수준이 낮으나 최근 사이버보험을 금융사업을 이끌 새로운 분야로 인식하고 사이버보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6) 임준, 이상우, 이소양,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역할제고 방안, 보험연구원, 2018, 25쪽

7) D사의 사이버보험 약관 중 개인정보침해 배상책임 담보 부분을 의미한다.

8) 임준, 이상우, 이소양, 앞의 논문, 22쪽

9) 김종호, 앞의 논문, 48쪽

10) 보험매일, 2020. 5. 6. “사이버폭력까지?...보험영역 어디까지 확대되나”

11) 변혜원, “일반손해보험에 내재된 리스크 관리”, KIRI 리포트 (2018. 5. 8.), 보험연구원, 17~19쪽

12) 이소양, “미국 사이버보험시장 최근 동향”, KIRI 리포트(2020. 8. 31.), 보험연구원, 1쪽

등 집중 육성하기 시작했다¹³⁾.

일본의 사이버보험 시장 규모는 2006년 70억 엔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 118억엔으로 증가하였고, 최근 대기업의 정보보안 대책 강화와 기업의 정보유출 리스크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제도가 활용되고 있어 그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¹⁴⁾,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도 사이버보험이 늦게 출시되었고 중국 기업의 사이버 위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중국의 기업성 사이버보험 시장규모는 미미하나, 2016. 11. 사이버보안법 제정으로 중국 기업의 사이버보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¹⁵⁾.

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손해배상책임 보험 등 가입 의무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일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개인정보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되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9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¹⁶⁾은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등 법을 위반할 경우를 대비해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험·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대상이 되는 기업은 전년도 매출 5000만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개인정보 저장·관리 중인 이용자 수(DB 기준)가 일일 평균 1000명 이상인 경우다. 이에 따라 사이버보험 중 정보유출배상책임 부분의 경우, 그 가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사이버보험의 한계

사이버보험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품 개발 및 언더라이팅 능력의 제고가 필요하다. 사이버보험의 공급 측면에서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어디서나 공히 겪고 있는 난관이다. 사이버 사고와 관련하여 경험 데이터가 부족하고 위험의 형태나 침

해를 야기하는 방법이 다양할 뿐 아니라 위험의 양상과 관련된 기술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위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험업계와 정보보안 전문가들, 통계청 등이 협업이 필요하다¹⁷⁾.

III. 사이버보험 관련 국내외 분쟁 사례

1. 국내 분쟁 사례

(1) U사¹⁸⁾

암호화폐 거래소 U사는 2017. 12. 해킹에 의해 고객들이 위탁한 암호화폐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고객들에게 금월을 배상하였다. 당시 U사는 D보험사의 사이버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

13) 최우석, “사이버위험관리를 위한 보험의 역할 및 과제”, THE RISK VOL4. NO.4(2017), 코리안리재보험, 5쪽

14) 최근 일본 손해보험사들은 재택 근무로 발생하는 위험을 종합 보장하는 재택근무 종합보험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일본 손해보험사들이 선보이고 있는 재택근무 종합보험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정보 유출이나 직원의 노무 관리에 발생하는 배상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파이낸셜뉴스, 2020. 6. 23., 日 코로나에 재택근무 보험 출시...국내도 나오나)

15) 위 임준, 이상우, 이소양, 앞의 논문, 57~90쪽

1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2) 그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의미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4).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하는바(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행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17) 국제심포지엄 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보험, 보험연구원(2018), 14, 16~17쪽; 2018. 11. 5.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국제심포지엄 ‘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보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자료이다.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가합52810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2024412 판결

고, 담보 위험은 정보유지위반 배상책임, 개인정보침해피해, 네트워크 보안 배상책임, 평판리스크 등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U사는 위 사이버종합보험 중 '네트워크 보안 배상책임'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구하였고, D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 위험변경통지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U사는 D보험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D보험사가 주장한 고지의무 위반 사유 중 일부 사유에 대하여는 고지의무 위반 요건 중 보험계약자의 고의, 중과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아니한 반면, 전문보안업체로부터의 보안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실고지가 있고 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고의, 중과실이 인정됨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D보험사 승소 판결을 하였고, 제2심 법원도 U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후 당사자간 상고 포기로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은 국내에서 최초로 암호화 화폐 해킹피해에 대한 사이버종합보험의 담보 여부가 소송에서 쟁점이 된 사안이다. 특히 위 판결은 사이버종합보험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고지의무의 기준 시점,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 관련 입증책임 소재 등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판시하였다.

(2) B사

가상화폐 거래소 B사가 2018. 6.경 해킹에 의해 350억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B사는 당시 H1보험사의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에 보상한도 30억원, H2보험사의 '뉴시큐리티 사이버종합보험'에 보상한도 30억원의 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다.

H1보험사의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소유, 관리하는 개인정보 유출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인데, 본건의 경우 B사가 직접 가상통화를 도난당한 건이고 개인정보유출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사안은 아니었으므로 위 보험으로 본 사고가 담보되기는 어려웠다. 또한 당시 B사가 가입한 H2의 사이버종합보험은 (i) 정보유지 위반 배상책임(회사 기밀 유출로 인한 피해 담보) (ii) 네트워크 보안 배상책임(시스템 해킹에 따른 복구비용 담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외에 재산 피해 담보는 별도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B사는 위 사고로 B사 재산에 피해를 입었는데 정작 위 재산피해 담보는 별도로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여서 위 사고로 인한 피해는 위 사이버종합보험으로 담보되기 어려웠다.

위 건의 경우 약관 해석에 이견이 존재할 가능성이 낮아 법적 분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3) K사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K사가 2013년 말경 카드사들로부터 시스템 개발 업무를 위하여 카드고객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K사 직원이 위 카드고객 정보를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K사는 D보험사와 사이버보험 중 하나인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상태였다.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은 사이버종합보험 중 하나로, 피보험자가 업무수행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누출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이에 K사는 카드고객들로부터 제기당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사실이 확정되자, 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D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D보험사가 해당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K사는 해당 보험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국내에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송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러한 손해배상책임 인정으로 인해 가해자(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와 관련하여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 여부가 법적 분쟁으로 진행된 건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위 소송은 초기 단계여서 당사자 간 주장, 공방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인바, 향후 위 소송 과정에서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법리가 확인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해외 사례

(1) 미국¹⁹⁾

미국의 경우 사이버보험은 사이버보험 단독의 형태(stand-alone cyber insurance)로 가입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보험(예를 들어, Property Insurance,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 등)에 가입하고 위 보험에서 특약 등을 통하여 사이버 사고를 담보하는 경우도 있다.

사이버보험 단독의 형태 중 최초로 법적 분쟁이 발생한 사안은 Columbia Casualty Co. v. Cottage Health System이다²⁰⁾. 이 사안에서 Cottage Health는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환자의 건강 관련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Cottage Health가 적절한 보안 조치 없이 인터넷으로 접근 가능한 시스템 상에 위 정보를 보관하였고, 의료정보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캘리포니아법상 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참고로, 우리나라 사이버 종합 보험 약관에서도 피보험자가 시스템, 네트워크 등 적절한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험자의 보상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최근 판시된 "P.F. Chang's China Bistro Inc, v. Fed. ins. Co."사안은, 상인이 신용결제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신용결제시스템 운영 업체와 계

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던 중, 해킹으로 위 상인의 고객 정보들이 유출되자 위 시스템 운영 업체에게 별금이 부과되었고, 위 시스템 운영 업체는 상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다시 상인에게 위 별금을 전가한 경우에 관한 사례인데, 법원은 위 상인이 가입한 사이버 보험상 약관이 정하는 손실에 위 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별금 지급으로 인한 손실은 담보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²¹⁾. 이 사례는 사이버보험의 담보 범위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과거 미국 판례는 보험 약관상 담보하는 전통적인 재물손해(property damage)에 '프로그래밍된 정보'등이 포함된다고 판시하기도 하고²²⁾,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터나 정보는 추상적이고 무형적이므로 '유형물에 대한 물리적 손상'(physical damage to tangible property)이 아니라고 보아 담보 범위에서 제외하기도 하였다²³⁾.

(2) 영국

영국의 경우, 사이버 보험 관련 보험금 분쟁이 빈번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컴퓨터 시스템 해킹 과정에서 해커에게 지급한 비트코인이 재산권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²⁴⁾. 영국을 비롯한 유

19) 2018 Emerging Issues 8647, Insurance Coverage Issues Created by the Internet of Things, LEXISNEXIS, 2018. 6. 5.

20) No. 2:15-CV-03432 (C.D. Cal. May 5, 2015)

21) No. CV-15-01322-PHX-SMM, U.S. Dist. LEXIS 70749 (D. Ariz. May 31, 2016)

22) American Guarantee & Liability Insurance Co. v. Ingram Micro, Inc., CIV 99-185 TUC ACM, U.S. Dist. LEXIS 7299 (D. Ariz. April 18, 2000)

23) Am Online Inc v. St. Paul Mercury Ins. Co., 347 F.3d 89 (4th Cir. 2003)

24) 위 사안은 캐나다 회사(피보험자)가 영국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사이버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피보험자는 컴퓨터 시스템 해킹을 당하였고, 해커는 피보험자가 더 이상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비트코인을 지급

렵의 경우, 해커들이 해킹을 하고 해킹을 푸는 대가로 일정 금액(이하 랜섬(ransom))을 요구하는 사건이 많아, 다수의 보험회사들이 사이버보험에 랜섬(ransom)에 대한 지급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호주의 경우 이러한 랜섬(ransom)을 지급하는 것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종합보험 중 하나로 위 랜섬 지급비용을 담보하는 상품도 판매하고 있다(위 D보험사의 사이버보험 참조).

IV. 사이버 보험 관련 법적 이슈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금 지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양상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먼저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약관상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① 해당 사고는 약관상 보험사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설령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② 고지의무, 위험변경통지의무 위반 사유 등을 찾아 보험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③ 약관상 면책사유가 존재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는 ① 해당 약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거나 ② 해당 약관의 내용이 모호한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작성자 불이익 변경의 원칙에 의하여 보험회사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투다.

사이버보험도 담보하는 위험이 화재 등과 같은 전통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점에 특이성이 있는 것일 뿐이므로 상법 보험편의 보험의 법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사이버보험에 담보하는 위험의 특성상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에 대하여 순서대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보험사고 발생

(1) 전문기관을 통한 사고 경위 파악

앞서 살펴본 D보험사의 사이버보험 약관에 따르면, '네트워크 보상책임 담보' 부분에서 '보험사고'는 직접적인 원인이 피보험자의 컴퓨터 시스템에 발생한 악의적 컴퓨터 행위(해킹), 또는 피보험자의 보안 환경의 오류 또는 위반에서 기인한 피보험자의 컴퓨터 시스템 상의 컴퓨터 멀웨어일 때를 전제로, (i) 제3자의 컴퓨터 시스템 상의 데이터 훼손 또는 손해, 또는 (ii) 제3자의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도난, 또는 (iii) 제3자의 컴퓨터 시스템을 목표로 한 서비스 거부, 또는 (iv) 제3자에게 속한 재산에 가해진 손상으로 인하여, 제3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악의적 컴퓨터 행위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점 등의 전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외에 앞서 살펴본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전통적인 보험 상품에서 보험사고의 개념은 그리 복잡하지 않았는데 반하여, 사이버 보험의 경우 약관상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보험사고 발생이 인정된다. 그리고 대법원은 일관되게 보험사고 발생의 입증책임은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479 판결).

따라서 보험계약자로서는 사고 발생시 즉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고의 시점, 사고의 원인, 경위, 사고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회사는 해당 비트코인을 해커에게 지급한 다음, 제3자업체를 통하여 해당 비트코인을 추적하여 비트코인이 있는 계좌를 찾아 낸 다음, 해커가 비트코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재산권적 유지처분(proprietary injunction)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비트코인이 Property로 간주되어 재산권적 유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위 사안에서 영국법원은 처음으로 비트코인이 property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의 태양을 정확히 조사, 확인하여, 보험기간 내에 약관이 정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사이버보험 중 일부 담보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사비용도 함께 담보해 주기도 한다.

(2)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개수

사이버보험 중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 담보의 경우, 보험회사는 질문서를 통하여 피보험자가 보유,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개수를 확인하게 된다. 이 때, 보험계약자는 자신들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개수를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보험사는 정보유출의 최대 규모, 피해 규모 등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보험계약자가 보유, 관리하는 정보 개수는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으나, 만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유출된 정보의 개수와 질문서에 기재된 정보 개수 사이에 그 차이가 현저한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정보의 유출은 해당 보험이 담보하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할 수 있다²⁵⁾.

(3)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사이버보험 상품 중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액을 담보하는 부분(예를 들어, 정보유지위반 배상책임 담보, 개인정보침해 배상책임 담보, 네트워크보안 배상책임 담보 등)의 경우, 상법 보험편이 정하는 책임보험(상법 제719조)의 한 유형이다.

상법 제719조는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사이버보험 상품²⁶⁾은 보험사고의 정의 조항에 ‘보험사고란 제3자가 피보험자에게 배상청구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3자가 피보험자에게 배상청구를 하였으나 결국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일반적인 책임보험상품과 사이버보험상품 중 배상책임담보 부분이 달리 취급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인 책임보험에서도 보험사고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정면으로 다룬 판례는 없으나, 손해사고설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는 판례가 있고, 보험실무상으로도 각 책임보험의 특성을 고려해서 해당 보험 약관에서 보험사고를 약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사고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는 각 보험 약관의 해석에 따른다고 해석되고 있다²⁷⁾. 결국 사이버보험 중 배상책임 담보 부분에서 보험사고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도 해당 부분의 약관에 따라 정해진다.

대부분의 사이버보험 약관은 보상하는 내용에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합의, 중재, 재판 등을 통하여 피보험자에게 인정된 배상책임 이외에도 방어비용(법원이 배상청구가 약관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고 확정될 때까지)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²⁸⁾, 제3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하였다가 종국적으로 법원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피보험자는 그 동안 소요된 방어비용을 담보 받을 수 있다.

한편, 기업의 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5) 이외에도 보험회사는 질문서에 허위 기재가 있었다고 하면서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26) 앞서 살펴본 D보험사의 약관

27) 책임보험에서 보험사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i) 손해사고설(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사고가 보험사고라는 학설), (ii) 책임청구설(타인의 피보험자를 상대로 책임을 청구하는 것이 보험사고라는 학설), (iii) 책임부담설(타인의 청구가 있은 후 소송 등의 절차에 의해서 피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보험사고라는 학설), (iv) 책임이행설(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보험사고라는 학설)이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은 손해사고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판례라고 소개되고 있다(한기정, 보험법, 박영사, 2017.594~596쪽)

28) D보험사의 정보유지위반배상책임 부분에도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다른 약관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법 제720조도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 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유무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정보 유출이 있다 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거나(대법원 2015. 2. 12. 2013다 43994 판결),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그리고 주의의무 위반과 유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4다206785). 따라서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위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여(책임보험에서 보험사는 피보험자와 제3자 사이에 손해배상책임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 측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다투 수 있다. 다만, 법원이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는 관련 방어비용 등을 담보 받을 수 있다.

2. 보험계약 해지사유

(1)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는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②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 일정한 기간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상법 제651조), 이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상법 제655조). 이에 보험사로서는 보험금 청구를 받으면 혹시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관되게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보험실무상 통상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청약서 또는 질문서 등에 중요사항에 관한 질문이 담겨 있고 이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고지의무가 이행되는데, 이처럼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사항으로 추정된다(상법 제651조의2). 다만 대법원은 보험계약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따라 중요한 사항으로 고지의무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기도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7474 판결).

이에 사이버보험에서도 보험사는 IT보험 종합설문서, 개인정보보호유출배상책임보험 질문서 등의 형식으로 보험계약자로부터 서면 답변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 보험계약자의 영업에 대한 사항, ② 시스템 환경 및 관리 사항(서버시스템의 내용, 전문 보안업체로부터 보안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여부, 보안서비스 업체명, 제공받는 서비스,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방화벽 등 사용 여부), ③ 관리보안에 관한 사항(관련 사내규정, 패스워드 변경 여부 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질의, 답변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사이버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마다 업종별 위험의 정도, 개별회사별 보안 시스템 체계 등이 천차만별이므로 보험요율 산정 등을 위하여 위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 사이버 보험은 사고 축적 데이터가 부족하고, 사고 발생시 손해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 적정 보험요율 산정이 어려운 한계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험회사로서는 보안업체 등과 협력하여 위 질문서 항목을 계속적으로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중요한 사항을 고의, 중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상법 제651조 단서), 보험회사가 중요한 사항을 굽어서 사전에 확인, 점검하는 것은 더 의미가 있다.

한편,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는, 보험자가 위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할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고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항변할 수 있다. 대법원은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

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 판결). 따라서 미고지 또는 부실의 고지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구체적으로 질문서에 답변한 직원)로서는 자신들이 보안전문가나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므로 해당 질문사항의 의미 및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다거나, 시스템 구비 상태에 관하여 일부 부정확한 답변을 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변해 볼 수 있다. 보험계약자로서는 질문서에 보다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 또는 중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항변을 하기 위하여, 질문서 작성시 영업팀 직원 뿐 아니라 보안, IT 전문팀 직원이 동석하여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작성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국내 분쟁 사례(U사 사건)에서도 고지 의무가 주요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을 주장한 사유 중 ① 방화벽 관련 고지의무 위반, ② 백신 관련 고지의무 위반, ③ 패스워드 주기적 변경 관련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질문 사항에 대하여 미고지 또는 부실의 고지를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일부 부정확한 답변에 대하여도 고의,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보험사의 고지의무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만, 법원은 위 사안에서 ④ 전문 보안업체로부터의 보안서비스 관련 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보험사의 고지의무 위반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히, 제2심 판결은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의 기준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일이라고 하면서, 보험계약자가 전문 보안업체로부터의 보안 서비스 이용 여부 항목에 '예'라고 기재한 이상, 보험계약 체결일까지 보안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면, 보험사에게 알려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204412 판결). 따라서 보

험계약자로서는 질문서 답변 당시 향후 시스템 정비 등을 계획하고 기재한 사항이 있다면, 이후 보험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로 답변한 대로 시스템 등이 실현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고, 만일 예상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2) 위험변경통지의무 위반

상법 제652조에 의하면,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자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료 증액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통지의무는 면제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판결). 여기서 '위험변경증가의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특정한 상태의 변경이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상태의 변경이 보험자의 입장에서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하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17108 판결).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므로,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로서는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청약시 제출한 질문서 등에 기재된 사실이 변경되는지 살펴야 하고, 이는 일용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인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자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

U사 사건에서 보험사 측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질문서 작성 당시 보안서비스를 받고자 컨설팅 업체와 협의를 하고 있었으나 보험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도 보안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았음에도 이를 보험사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상법 제652조의 위험변경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보험 계약 체결 시점은 기준으로 그 전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고지된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사실 변경이 있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험변경통지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은 이미 보험계약 체결 시점 당시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이었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변경된 사정이 아니므로,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될 사안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고지의무의 기준 시점이 보험계약 체결시점이라는 점을 보충적으로 판시하면서 이는 고지의무의 문제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설시하였다.

3. 면책 사유

(1)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사이버종합보험에는 전체 담보 부분에 적용되는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규정이 있고, 여기에는 피보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약관이 무효가 되는 사유, 보험자의 보상을 위한 전제 조건 등이 규정되어 있다.

D보험사의 사이버종합보험 약관 일반조건 제11조에도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의 전제조건으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아래의 열거된 조건들을 완벽히 따를 경우에만 본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의무를 가진다’고 정하면서, 컴퓨터 백업, 컴퓨터 멀 에어 방지 소프트웨어, 컴퓨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호 등을 열거하고 있다. 즉, 보험계약자로서는 보험사고를 방지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자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 이는 건물 소유주가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를 담보받기 위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만 동시에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설치하고 화재 위험을 완화해야 하는 것과 유사하다.

사이버리스크 담보 범위가 확대되면서 많은 보험사들이 위와 같이 보험계약자가 준수해야 할 항목을 늘리거나, 이를 담보 제외 항목으로 규정함으로써 담보 제외 항목을 늘리고 있다. 일례로, 미국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던 Wanna cry 랜섬웨어 사건²⁹⁾에서, Wanna cry에 감염된 기업과 조직의 컴퓨터 시스템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미 공개한 보안패치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이는 기업과 조직이 보안 취약성 문제에 대한 대응을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했다고 하면서 사이버보험에서 과실, 태만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부담함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와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³⁰⁾.

따라서 보험계약자로서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 보호 등 보험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하여 보험사로서도 사이버사고 관련 무분별한 보험금 지출을 방지하고 적정한 보험금 지출 규모를 예상할 수 있다.

(2) 면책조항(Exclusion)

위와 같은 일반 조건 외에, 사이버종합보험 약관에는 통상 전체 담보 부분에 적용되는 일반 면책조항(General Exclusions)이 규정되어 있고, 각 담보 별로 특유하게 적용되는 담보별 면책조항이 규정되어 있다³¹⁾³²⁾.

일반 면책조항 앞 부분에는 ‘다음 원인에서 특정 해당 부분 내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보상에서 면

29) 2017. 5. 경 발생한 랜섬웨어 wanna cry 공격은 150여개국의 20만대의 컴퓨터에 감염되었고, 2017. 5. 중순 약 천만 달러의 인질비용, 80억 달러의 영업정지 관련 비용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영국의 공공 의료서비스 시스템까지 마비시키는 등 대규모 시스템 마비를 가져왔다(변혜원, 앞의 논문, 15~16쪽).

30) 김종호, 앞의 논문, 57쪽

31) 다른 종류의 패키지보험인 재산종합보험 약관에도 일반 면책조항과 각 담보별 면책조항이 나누어 규정되어 있다.

32) 본 논문에서는 각 담보별 면책사유에 대하여는 논의를 생략하였다.

책되며 본 약관에서 담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각 담보별로 담보하는 것으로 규정된 부분은 해당 조항에 의하여 담보된다. 예를 들어, 일반 면책조항 중 하나로, 요구받은 랜섬, 협박 면탈 대가가 열거되어 있으나(제32조), 사이버 협박(갈취)담보 부분은 애초에 위와 같은 랜섬 등을 보상하기 위한 담보 유형이므로, 위 담보 유형에서는 위 일반면책조항 제3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³³⁾. 또한 일반 면책조항 중 하나로 '피보험자나 외주공급자의 작위, 부작위로 발생하는, 악의적이거나 신중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인 부정행동 또는 사기'를 정하면서(제18조), 위 면책조항은 '피보험자의 직원들이 행한 피보험자의 컴퓨터 시스템상의 악의적 컴퓨터 행위 또는 데이터 도난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예외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직원들의 행위는 모두 위 면책조항의 예외 사유(부책)가 되는 것인지, 피보험자의 직원들의 행위 중 일부 행위 태양에만 위 예외 사유가 적용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위 예외 사유의 '등'이 어느 행위 태양까지 포함되는 것인지를 비롯하여, 위 면책조항과 예외조항의 의미 및 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하다. 면책사유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이에 관하여 약관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적절히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 한, 위 면책사유 존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보험자의 작위나 부작위에 의한 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제26조)도 일반 면책조항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보험사로서는 막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적용 가능한 면책조항을 최대한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고, 피보험자로서는 운영 과정에 사소하거나 경미한 법 위반 사유 등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험사고와 상관이 없는 경미한 법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동산종합보험에서 '법령 기타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라는

면책조항은 '중대한 법령이나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³⁴⁾.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면, 보험회사가 등 조항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법 위반이 중대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할 것이다.

USA 사건에서도 보험사 측에서는 피보험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을 이유로 위 면책사유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제1심, 제2심 판결에서 모두 고지의무 위반이 주요 쟁점이 되고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됨에 따라, 위 면책사유의 의미 및 적용 여부 등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4. 설명의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사이버보험은 기존에 담보하지 않았던 새로운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이므로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33) 이에, D보험사의 사이버협박(갈취)담보 부분 6. 면책 조항에는 '일반면책조항들을 제6부문에 적용하되, 32항을 예외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4) 대법원은 '위 약관 소정의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라는 면책조항을 문언 그대로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를 아무런 제한 없이 보험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중대한 법령 위반이 아닌 사소한 법령이나 규칙 위반의 경우에도 보험자는 면책이 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사소한 법령이나 규칙 위반의 경우에 있어 위 중장비추가 약관상의 면책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면책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사고의 발생 당시 시행되고 있던 중장비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에 관한 법령이나 규칙의 위반이 무면허운전 행위와 같은 보험사고의 발생 혹은 증가의 개연성이 극히 큰 경우와 같은 '중대한 법령이나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 법령 위반의 내용이 무면허운전 행위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당시 무면허운전 행위가 보험계약이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 즉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11898 판결)

필요하다. 사기업들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어떤 위협에 대해 얼마를 보상해 주는지 정확히 모르고, 모든 사이버상의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실무에서는 보험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체결 당시 문제되는 약관 조항은 중요한 내용인데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약관 조항의 적용 배제를 주장하는데, 현실적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체로 소송 과정에서 해당 보험계약 체결에 관여한 보험모집인이나 당사자들(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들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설문서 이외에도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징구하기도 하나, 구체적인 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입증방법으로서는 여전히 불완전한 것이 현실이다. 설명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은 사회통념상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16. 선고 2007마1328 판결). 사이버보험에서도 마찬가지로 담보 여부와 관련한 면책 사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험계약 체결 시 설문서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면책 여부나 보험료 등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충실향한 설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사이버종합보험 약관³⁵⁾에는 일반적 용어 부분에 각종 용어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으나, 불분명한 부분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어 보험사에게 불리한 의미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규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사이버 위험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규모가 커지고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이버보험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 현재 사이버보험의 시장은 코로나 19 등으로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지만, 아직 사이버보험 그 자체에 대한 법적 분쟁 사례는 많지 않다. 다만 사이버보험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향후 사이버보험 관련 다툼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사이버보험 자체의 특유한 논리들도 개발, 발전될 것이다.

35) 앞서 살펴본 D보험사의 약관